#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의 안 번 호 6662 제출연월일: 2024. 12. 18.

제 출 자:정 부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산림기술용역업자가 일정 기간 휴업하는 경우 종전에는 그 휴업기간에 관계없이 휴업신고를 하도록 하였으나, 앞으로는 3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에만 휴업신고를 하도록 함으로써 산림기술용역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영업 수행의 자율성을 높이려는 것임.

#### 법률 제 호

#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5조제4항 중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휴업 또는 폐업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"를 "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"로 하고,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1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: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
- 2. 3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: 휴업한 날부터 30일 이내
- 3. 폐업하는 경우: 폐업한 날부터 30일 이내

제18조제2항 중 "휴업"을 "30일 이상 휴업"으로, "제15조제4항"을 "제15조제4항제2호 또는 제3호"로 한다.

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# 신・구조문대비표

햀 개 정 안 혀 제15조(산립기술용역업의 등록 등) 제15조(산립기술용역업의 등록 등) ① ~ ③ (생 략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④ 산림기술용역업자는 대통령 ④ ----- 다음 각 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변경하거나 휴업 또는 폐업하는 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기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렁으 간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가 로 정하는 바에 따라 -----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산 림청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 야 한다. <신 설> 1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: 변경사 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 내 2. 3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: 휴 <신 설> 업한 날부터 30일 이내 <신 설> 3. 폐업하는 경우: 폐업한 날부 터 30일 이내 ⑤ ~ ⑦ (생 략) ⑤ ~ ⑦ (현행과 같음) 제18조(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취 제18조(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취 소 등) ① (생 략) 소 등) ① (현행과 같음)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 록이 취소되거나 휴업 또는 폐 ----- 30일 이상 휴업 업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15 제15

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	조제4항제2호 또는 제3호
니한 경우 해당 산림기술용역업	
자의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.	
③ ~ ⑨ (생 략)	③ ~ ⑨ (현행과 같음)